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72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언주 · 박범계 · 윤준병
안호영 · 남인순 · 조계원
장철민 · 김현정 · 김병주
이수진 · 허성무 · 정진욱
송옥주 · 김남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 · 유럽연합 · 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자국 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자국 정부의 직 · 간접적인 생산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여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태양광발전 · 풍력발전 ·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 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 ·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

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전기자동차는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전기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전장부품·반도체·소프트웨어·소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대규모 지역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핵심 제조업임. 따라서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단계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대하여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도의 적용기간과 단계적 축소구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생산연도와 판매·수출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판매 또는 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위탁생산·특수관계인 거래·반품·중복공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포함함(안 제100조의35제1항 및 제2항).

나.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전략품목을 해당 과세연도에 국내에 판매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수출한 경우, 그 판매·수출수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생산지역별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0조의35제1항 및 제3항).

다. 전기자동차의 기준공제액은 1대당 400만원으로 하고, 차종·용도·배터리 용량·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35제4항).

라. 공제제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하되, 2034년·2035년·2036년에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품목의 공제액을 각각 기준공제액의 75퍼센트·50퍼센트·2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축소함(안 제100조의35제5항).

마. 수도권외의 생산지역별 계수는 1로 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고용창출 및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1 초과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의35제6항).

바. 동일한 전략품목의 생산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은 해당 전략품목의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되, 차감액은 해당 공제금액을 한도로 하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전기자

동차 구매보조금은 제외함(안 제100조의35제7항).

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내국인은 생산·판매·수출수량, 국내 최종 제조공정 및 생산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0조의35제8항).

아. 직접 생산자의 판정, 위탁생산 시 공제대상자의 결정, 특수관계인 간 거래, 판매 취소·반품 및 중복공제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의35제9항).

자. 새로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되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 체계 안에서 적용되도록 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는 현행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체계를 적용함(안 제132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전략품목 국내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전략품목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전략품목이 판매되거나 수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전략품목”이란 녹색전환,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생산기반의 유지·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전략품목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품목의 수량에 품

목별 기준공제액과 생산지역별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전기자동차의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1대당 4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차종, 차량의 용도, 배터리 용량, 에너지소비효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1대당 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공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34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기준공제액의 100분의 75를, 2035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203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각각 품목별 기준공제액으로 본다.

⑥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고용창출 및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을 초과하고 1.5 이하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동일한 전략품목의 생산비용을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략품목에 대응하는 지원금 상당액을 제

1항에 따른 공제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금액은 해당 전략품목에 대한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구매보조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품목의 생산·판매·수출수량, 국내 최종 제조공정 및 생산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전략품목의 범위, 국내 직접 생산 및 국내 판매·수출의 요건, 생산·판매·수출수량의 산정, 국내 최종 제조공정의 범위, 직접 생산자의 판정, 위탁생산의 경우 공제대상자의 결정, 특수관계인 간 거래, 판매의 취소·반품, 중복공제 방지, 생산지역별 계수, 공제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품목 국내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전략품목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절의6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u> <u>제100조의35(전략품목 국내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전략품목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전략품목이 판매되거나 수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u> <u>② 제1항에서 “전략품목”이란 녹색전환,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생산기반의 유지·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u>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전략품
목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국
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
품목의 수량에 품목별 기준공
제액과 생산지역별 계수를 곱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전기자동차의 품목별 기준
공제액은 1대당 4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차종, 차량의 용도,
배터리 용량, 에너지소비효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고려하여 1대당 400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공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34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
까지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기준
공제액의 100분의 75를, 2035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
까지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203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각각 품목별 기준공제액으로 본다.

⑥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고용창출 및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을 초과하고 1.5 이하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동일한 전략품목의 생산비용을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략품목에 대응하는 지원금 상당액을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금액은 해당 전략품목에 대한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u>의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u> <u>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품목의 생산·판매·수출수량, 국내 최종 제조공정 및 생산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⑨ 전략품목의 범위, 국내 직접 생산 및 국내 판매·수출의 요건, 생산·판매·수출수량의 산정, 국내 최종 제조공정의 범위, 직접 생산자의 판정, 위탁 생산의 경우 공제대상자의 결정, 특수관계인 간 거래, 판매의 취소·반품, 중복공제 방지, 생산지역별 계수, 공제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① ----- -----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 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illegible]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3. (생략)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